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효력발생일 : 2014년 2월 10일

□ 정정 사유

1. 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주형 → 김진성, 전효준)
2.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추가 (환매조건부 매수)
3.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4.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변경 (1등급 → 2등급)
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정정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투자위험등급 : <u>1등급 [매우 높은 위험]</u>	투자위험등급 : <u>2등급 [낮은 위험]</u>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간이 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모투자신탁 연혁</u> <u>2014.2.10 투자대상자산 중 환매 조건부 매수 추가</u>
5. 운용전문인력	<u>김주형</u>	<u>김진성, 전효준</u>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u>2013.04.30</u>	<u>2013.12.31</u>
5. 운용전문인력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김주형 : 2013.04.22~현재	<u>김주형 : 2013.04.22~2014.02.09</u> <u>김진성 : 2014.02.10~현재</u>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u> <u>-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모 투자신탁(주식혼합)</u> <u>김주형 : 2013.01.04~2014.02.09</u> <u>김진성 : 2014.02.10~현재</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p><신 설></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p> <p>- 트러스트다이내믹코리아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p> <p>8) 환매조건부 매수</p>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p><u>1등급 : 매우 높은 위험</u> <u>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5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모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형)에 투자하는 증권자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형)으로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u></p>	<p><u>2등급 : 높은 위험</u> <u>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5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형)으로서 롱포지션(Long Position) 50~80%, 숏포지션(Short Position) 30~40%로 구성하여 주식의 순투자비율(Net Exposure)이 20~30%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국공채 등 우량 채권에만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u></p> <p><u><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u></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p>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u><삭 제></u></p>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p>(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② <u>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u></p>	<p>(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② <u>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p> <p>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 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 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p>	<p>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u>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2. <u>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u> 3. <u>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4. <u>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u> <p>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u>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u></p> <p>⑥ <u>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u></p>
--	---	---

	<p>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u>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p> <p>-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p>	<p>(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u>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u></p> <p>-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p>	<p>(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u>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u></p> <p>-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p>
<p>(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p>	<p>(4) 반대매수청구권 <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p>

		<p>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u>②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라. 손해배상책임</p>	<p>⑤ 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p> <p>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 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p>	<p>⑤ 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u></p> <p>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 신고 당시의 <u>매출인</u></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가. 정기보고서</p> <p>(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p>	<p>① 영업보고서</p> <p>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u>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u>이 기재된 서류</p>	<p>① 영업보고서</p> <p>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u>행사내용 및 그 사유</u>가 기재된 서류</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가. 정기보고서</p> <p>(2) 자산운용보고서</p>	<p>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으로 표시한 경우</p>	<p>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u>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으로 표시한 경우</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나. 수시공시</p> <p>(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p>	<p>- 신탁계약기간의 변경</p>	<p>-신탁계약기간의 변경(<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나. 수시공시</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p> <p>-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p> <p>-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p> <p>-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p> <p>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p> <p>-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u>주주총회일 5일전까지</u>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p> <p>-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p> <p>- <u>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p> <p>-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p> <p><u><삭 제></u></p> <p>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u>주주총회일부 터 5일 이내</u>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u>의결권 행사 내용</u>을 공시해야 합니다.</p> <p><u><삭 제></u></p> <p><u><삭 제></u></p>
---	--	--

